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table border="1"> <tr> <td>부양가족</td> <td>직계존속</td> <td>직계비속</td> <td>형제자매</td> <td>위탁아동</td> <td>수급자</td> </tr> <tr> <td>나이요건</td> <td>60세 이상</td> <td>20세 이하</td> <td>60세 이상 20세 이하</td> <td>6개월 이상 양육</td> <td>없음</td> </tr> </table>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table border="1"> <tr> <td>공제대상</td> <td>경로우대 (70세 이상)</td> <td>장애인</td> <td>부녀자 (부양/기혼)</td> <td>한부모</td> </tr>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able>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차입시기</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5.1.1. 이후</td> <td>·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td> </tr> <tr> <td>'12.1.1.이후</td> <td>·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td> </tr> <tr> <td>'11.12.31. 이전</td> <td>·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td> </tr> </tbody> </table>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12.1.1.이후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11.12.31. 이전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12.1.1.이후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기부금 (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 한도 내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 10% (100%, 70%, 30%)* 공제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신용카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 330만원,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1.2억원 초과 : 200만원+ 전통신용카드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이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100만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결제수단 및 사용처별</th> <th>공 제 율</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td> <td>30%</td> </tr> <tr> <td>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td> <td>30%</td> </tr> <tr> <td>전통신용·대중교통사용분</td> <td>40%</td> </tr> </tbody> </table>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	30%	전통신용·대중교통사용분	40%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	30%												
전통신용·대중교통사용분	40%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 1,5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 (조특법제16조제1항제3호, 4호 및 제6호 제외),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세액감면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원	감면 대상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요건</th> </tr> </thead> <tbody> <tr> <td>청년</td> <td>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이전 15~29세 이하)</td> </tr> <tr> <td>고령자</td> <td>60세 이상인 자</td> </tr> <tr> <td>장애인</td> <td>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td> </tr> <tr> <td>경력 단절 여성</td> <td>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td> </tr> </tbody> </table>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이전 15~29세 이하)	고령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 단절 여성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이전 15~29세 이하)																										
			고령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 단절 여성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율 및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대상자</th> <th>취업일</th> <th>감면율</th> <th>감면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청년</td> <td>2016.1.1.~</td> <td>70%(2018년 이후 90%)</td> <td>150만원</td> </tr> <tr> <td>2014.1.1.~2015.12.31.</td> <td>50%(2018년 이후 90%)</td> <td>한도 없음</td> </tr> <tr> <td>2012.1.1.~2013.12.31.</td> <td>100%(2018년 이후 90%)</td> <td>한도 없음</td> </tr> <tr> <td rowspan="2">60세이상자 장애인</td> <td>2016.1.1.~</td> <td>70%</td> <td>150만원</td> </tr> <tr> <td>2014.1.1.~2015.12.31.</td> <td>50%</td> <td>한도 없음</td> </tr> <tr> <td>경력단절여성</td> <td>2017.1.1.~</td> <td>70%</td> <td>150만원</td> </tr> </tbody> </table>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016.1.1.~	70%(2018년 이후 90%)	150만원	2014.1.1.~2015.12.31.	50%(20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2012.1.1.~2013.12.31.	100%(20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150만원	2014.1.1.~20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150만원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016.1.1.~	70%(2018년 이후 90%)	150만원																								
2014.1.1.~2015.12.31.	50%(20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2012.1.1.~2013.12.31.	100%(20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150만원																											
	2014.1.1.~20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150만원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2018년도 이후 귀속분은 5년																														

세액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50~66~74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7천만원 이하(66만원)·그 외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자녀	기본 공제대상	전액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전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특별세액공제	연금 계좌		연 18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① 본인 등	전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② 부양가족	연 105만원	<table border="1"> <tr> <td>② < 총급여액 3%</td> <td>② ≥ 총급여액 3%</td> </tr> <tr> <td>공제대상금액</td> <td>① - (총급여액 3% - ②)</td> <td>① + (② - 총급여액 3%)</td> </tr> </table>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전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당 300만원 한도					
		초·중·고생	1명당 135만원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 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한도내 전액	근로소득금액 100%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근로소득금액 30%							
			근로소득금액 30%							
근로소득금액 10%										
우리사주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액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원 (9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부록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 (2021년 귀속 기준)

구분	공제항목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	초·중·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례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기부금	기부금(긴급재난기부금 포함)

-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